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91

발의연월일: 2024. 11. 8.

발 의 자: 김소희·최은석·최수진

곽규택 · 김선교 · 박덕흠

김예지 · 박형수 · 엄태영

박준태 · 김성원 · 우재준

장동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」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지원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539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「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